일제하 조선인 '강제노역동원'과 손해배상청구소송*

송 규 진**

Ⅰ. 머리말
Ⅱ. '강제노역동원'과 미불금
Ⅲ. 해방이후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와 판결
Ⅳ. 맺음말

Ⅰ. 머리말

역사소설 '군함도' 출판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작가 한수산은 "피해 당사자와 함께 강제징용의 현장에서 그 증언을 토대로 쓴 유일한 소설임을 자부한다"며 "일제강점기 피해 당사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역사를 복원하고, 문학으로 기억한다는 작가적 의무 속에서 보냈다"고 말했다.[1] '군함도'는 일본 나가사키 현 나가사키 항에서 남서쪽으로 약 18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남북으로 약 480m, 동서로 약 160m 크기의 작은 섬이다. 섬의 모양이 일본군함 '도사'를 닮아 '군함도(軍艦島)'라고 불리며 정식명칭은 하시마(端島)이다. 한국인에게 '군함도'는 1940년대 조선인이 '강제노역동원'으로 착취당한 곳이며 일부는 억울하게 죽었던 원한의 섬이다.[2] '지옥섬' 또는 '감옥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8-362-A00001)
**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 한국근현대사전공
1) 심혜리, 「군함도는 통한의 과거 아닌 오늘의 문제 '기억'이라는 작가의 의무로 27년 매달려」, 『경향신문』, 2016.5.18.

섬'이라 불린 군함도의 작업장은 공간이 좁아 노동자가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든 곳이었다. 노동 환경이 열악한 해저 탄광으로 강제 징용된 조선인은 하루 12시간 동안 채굴 작업을 했다. 부적합한 채굴 조건으로 인해 일부 노역자가 병에 걸리거나 탄광 사고, 영양실조 등으로 사망했으며 도망을 시도하다 바다에 빠져 익사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어떠한 사과나 배상도 고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시마를 일본 산업혁명의 유산이라는 명목 하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을 추진하여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상처를 덧나게 했다.

조선인의 '강제노역동원'은 '군함도'를 포함하여 조선, 일본, 사할린, 만주, 중국, 남방 등 일본제국권 전역에서 이루어졌다. 한반도 내에서 각종 명목으로 동원된 노역자 수는 연인원 800여만 명이었고 일본이나 전쟁지역으로 동원된 노역자 수는 139만 이상, 군인 · 군속은 36만 이상에 이른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일본으로 동원된 노역자는 최소 70만을 넘고, '일본군 성노예(일본군위안부)'로 동원된 여성도 10만여 명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3] 일제는 중일전쟁을 단기간에 끝내려고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면서 태평양전쟁을 도발했고, 능력을 넘어선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조선에서 물자·자금 · 인력에 대한 수탈을 강화했다. 특히 '강제노역동원'은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 자체를 짓밟은 반인륜적 행동으로 물자나 자금수탈과 비

2) 윤지현은 남아있는 하나의 화장기록을 통해 1925년에서 1945년까지 '군함도'의 조선인 사망자가 122명이었음을 밝혔다. 모든 화장기록이 존재한다면 이 수치는 훨씬 많아질 것이다. 윤지현, 「死亡 記錄을 통해 본 端島炭鑛 朝鮮人 死亡者 被害實態(1925-1945)」, 『한일민족연구』 23, 2012 참조.

3) 통계수치가 갖는 의미는 통계산출의 기준은 수치 이면의 정치사회적 배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같은 통계를 가지고도 다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이 시기 통계자료는 극비자료로 분류되어 폐기되거나 은폐된 것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홍재환은 '강제노역자' 통계수치가 연구자마다 다르며 특히 부풀려져 있어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홍재환, 「전시기 조선인 동원자수 추정치 활용에 대한 비판, 『경제사학』 44, 2008 참조. 그러나 필자는 통계수치 자체는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당시 많은 조선인들이 강제적으로 노역을 할 수밖에 없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고 강제노역에 대한 적절한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교할 수 없는 문제이다. 그럼에도 억울한 희생을 당한 '강제노역동원' 피해자들은 해방 이후에도 대부분 가슴에 한을 묻은 채 살아야 했다.

일제하 조선인의 '강제노역동원'은 '강제연행', '전시노무동원', '강제동원', '강제연행 · 강제노동' 등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고 있다. 박경식은 한일회담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강제노역동원'을 역사적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일본사회의 현실에 맞서 그 실상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일본전역에 대한 현지답사를 한 후 증언채록 작업의 결과물을 정리했다. 1965년에 발간한 『조선인강제연행의 기록』이 그것이다.[4] 이후 이 주제와 관련한 많은 연구성과가 나왔으며 '강제연행'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었다.[5] 또 다른 용어로는 '전시노무동원'을 들 수 있다. 김민영은 '강제연행'이라는 표현을 '개개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개별적 개념으로 파악하고 '강제연행'이라는 용어가 무비판적으로 사용된 점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국내와 국외 동원을 포괄하는 집단적 개념으로서 '전시노무동원'을 사용했다.[6] 또 다른 용어로 '강제동원'을 들 수 있다. '강제동원'은 '전시노무동원'이라는 용어가 간과할 수 있는 '강제적인 노동력 이동'이라는 점이 강조된 개념이다.[7] 이 용어는 '강제동원' 정책이 '노동력 동원'뿐만 아니라 물자 · 자금수탈, 민족말살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활동에 따라 '강제동원'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 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정혜경은 '강제동원'이라는 용어는 학문적인 고민을 반영한

4) 박경식 지음, 박경옥 옮김, 『조선인강제연행의 기록』, 고즈윈, 2008 참조.

5) 김민영, 「일제하 조선인 '강제연행' 문제의 연구쟁점과 전망 (1)－전후처리 · 보상문제를 중심으로」, 『춘계박광순박사 화갑기념논문집』, 1993; 김인덕, 「일본지역 강제연행 연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7, 1997; 外村大, 『朝鮮人强制連行』, 岩波新書、2012 참조.

6) 김민영, 『일제의 조선인노동력 수탈 연구』, 한울아카데미, 1995 참조. 山田昭次 · 古庄正 · 樋口雄一은 '전시노동동원'이라는 개념을 사용했다. 山田昭次 · 古庄正 · 樋口雄一, 『朝鮮人戰時勞働動員』, 岩波書店, 2005 참조.

7) 飛田雄一 · 金英達 · 高柳俊男 · 外村大, 「朝鮮人戰時動員に關する基礎研究」, 『青丘學術論集』 4, 1994 참조.

것이 아니며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강제연행' 보다는 일반 대중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책적 차원에서 채택되었다고 지적했다. 정혜경은 전기호, 김영달의 연구에서 사용한 '강제연행 · 강제노동'이라는 용어를 받아들이면서 이 용어를 사용하여 많은 연구성과를 도출했다.[8)]

그런데 일본정부나 일부 일본인 학자들은 '강제연행'이라는 것은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일본 외무성은 1959년 7월에 제2차대전 중 일본에 온 '조선인'이나 현재 거주하는 대부분의 '코리안'에 대해 일본정부가 강제적으로 노동을 시키기 위해 연행한 사람이라는 오해와 '중상모략'이 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9)] 동원된 조선인은 30만 명 정도인데 그들은 업자의 모집에 응한 '자유계약' 노동자이며 '국민징용령'은 일본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데다 징용자 수도 일부분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를 보다 정교화하여 당시 조선인노동자는 고임금을 받고 노동을 했으며 이에 따라 관이 알선하여 '자유계약'이 이루어졌다며 강제성을 전면 부정한 연구자도 있다.[10)] 그러나 강제성은 논란거리가 될 수 없다. 총독부 재무국장을 역임하여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던 미즈타 나오마사(水田直昌)는 전후 한국인의 반일감정 원인을 일본의 '식민통치'때문이라며 특히 '인간을 탈취'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는 기록을 남기고 있다.[11)]

그 동안 국내 역사학계가 사료분석을 통해 '강제성'과 관련한 연구를 집중적

8) 한일민족문제학회, 『강제연행 · 강제노동 연구 길라잡이』, 선인, 2005; 정혜경, 『조선인 강제연행 · 강제노동 Ⅰ : 일본편』, 선인, 2006; 정혜경, 『일본'제국'과 조선인 노무자 공출－조선인 강제연행 · 강제노동연구 Ⅱ』, 선인, 2011 참조.

9) 外務省情報文化局, 『外務省發表第十号および公式資料集第八号(合冊)』, 1960, pp.51-52.

10) 岡田邦宏, 『朝鮮人強制連行はあつたのか－事實が語る「強制連行」說の虛構」, 日本政策研究センター, 2003 참조.

11) "…더욱 나쁜 것은 인간을 탈취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젊고 힘센 남자는 모두 징집되어 석탄을 채굴할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5천만톤의 석탄을 채굴해야 했는데 그 가운데 6할은 조선인이 담당했다. 남양군도에서 항구와 군항을 만든 것도 조선인이었다. 그런데 군 기밀이어서 어디에 있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연락이 되지 않아서 (행방을) 알 수 없다. 식량과 인간을 전쟁의 희생물로 탈취했다…". 水田直昌, 『財政 · 金融政策から見た朝鮮統治とその終局』, 友邦協會(近藤釰一 編, 『太平洋戰下の朝鮮』 3卷), 1962, p.25.

으로 했다면 법학계에서는 '강제노역동원'의 희생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한 법리적 검토를 해왔다.[12] 필자는 '강제노역동원'과 관련한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사학계에서 축적된 연구를 바탕으로 법학계의 법리적 검토를 종합하여 학제 간 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이 글을 작성했다.

지금까지 연구자들이 사용한 용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다 근거가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른 용어를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전시노무동원'을 제외하고는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수 있으며 '전시노무동원'의 경우도 강제성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강제노역동원'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하기에 이 글에서는 이 용어를 사용하면서 동원과정보다는 '노역장'에서 경험한 고통을 보다 강조하고자 했다. 또한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미쓰비시중공업(이하 미쓰비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과를 분석한 뒤 이 문제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피력하고자 한다.

II. '강제노역동원'과 미불금

1 '강제노역동원' 과정의 실태

일제는 1937년 7월에 중일전쟁 도발을 계기로 '대륙전진병참기지'로 규정된 조선에서 식량자원과 지하자원을 공공연히 수탈했으며 기업과 공모하

12) 강병근, 「국제법적 관점에서 본 일제강제징용 배상판결의 주요쟁점에 관한 연구」, 『저스티스』 143, 2014; 석광현, 「강제징용배상 및 임금 청구의 준거법」, 『서울대학교 法學』 54-3, 2013; 이근관, 「한일청구권협정상 강제징용배상청구권 처리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서울대학교 法學』 54-3, 2013; 이동진, 「강제징용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와 그 범위에 관한 몇 가지 문제」, 『서울대학교 法學』 54-3, 2013; 천경훈, 「전후 일본의 재벌해체와 채무귀속－일제강제징용사건의 회사법적 문제에 관한 검토」, 『서울대학교 法學』 54-3, 2013; 정인섭,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대상범위에 관한 연구」 『성곡논총』 25, 1996 참조.

여 조선인 노동력을 대대적으로 동원하려 했다. 따라서 조선인 '강제노역동원'은 일본정부가 기업과 함께 주도하고 조선총독부(이하 총독부)가 실행기구가 되어 실시한 야만적 범죄행위라고 할 수 있다. 1937년 9월에 일본 석탄연합회는 노동력 보충 진정서를 상공대신 앞으로 제출하면서 "석탄광업은 공장에 비해 노무모집에 항상 불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매년 상당수의 조선인 노역자의 고용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3] 일제가 이와 같이 주장하는 일본 산업계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강제노역동원'을 실시했으며 이에 따라 일본 대기업들은 큰 수혜를 받았다. 전시통제경제 구조하에서 모든 물자와 노동력이 군수산업을 운영하는 대기업 위주로 배치되었기 때문이다.[14]

일제는 전쟁수행을 위한 종합적인 법령으로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하면서 1938년부터 조선인 '강제노역동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다음과 같이 정비했다.[15] 조선인 노동자 통제기구인 '중앙협화회'를 내세워 '치안대책'을 마련한 일제는 「국민징용령」에 근거하여 후생성 · 내무성 · 총독부가 협의하여 「조선인 노무자 내지이주(內地移住)에 관한 건」을 제정했다. 일본의 석탄 · 금속광산 · 토건업을 위한 '모집' 명목의 '강제노역동원'을 개시한 이후 모집, 관 알선, 징용 등 세 가지 방법을 활용했다. 1939년 9월부터 강행된 모집은 일본 기업이 후생성의 허가를 얻어 대리인을 통해 모집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금품수수가 따르고 경찰의 힘이 있어야 모집이 가능했기 때문에 '관알선'이 필수적이었다. 모집단계부터 할당인원을 채우기 위해 사실상 강제적으로 진행된 것이다. 1940년에는 「조선직업소개소령」을 공포하고 6개의 관영 직업소개소를 설치했고 「종업자이동방지령」, 「국민노무수첩법」 등을 적용하여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구속을 강화했다. 1941년 6월에 조선노무협회를 설립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국민근로보국협력령」을 시행했다.

13) 박경식, 앞의 책, p.51.
14) 이상의, 『일제하 조선의 노동정책 연구』, 혜안, 2006, pp.181-184.
15) 정혜경, 앞의 책(2006), pp.97-105.

'강제노역동원'은 경제파탄에 빠진 조선인들에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짓 선전과 관·경찰·면직원의 위압적 '권유'와 함께 '천황의 전사가 되면 민족차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회유한 황민화정책 등이 어우러져 강행된 것이다. 지속적으로 주입된 강요 속에서 인식과 선택의 폭이 제한된 조선인은 강제성과 폭력성이 수반된 '노역동원'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 1942년 3월에는 보다 대규모의 「국민동원계획」을 세우고 강제력이 더욱 강화된 '관알선' 방식으로 다수의 조선인을 근로보국대라는 이름으로 동원했다. 1944년 4월에는 「긴급학도근로동원방책요강」, 「학도동원비상초치요강」 등의 각료회의 결정에 기초하여 학생동원을 실시하는 조항을 추가했고 곧 바로 초등학교부터 대학·전문학교에 이르는 전 학생을 군수물자 및 식량증산·국방시설 건설 등에 동원했다. 「국민직업능력신고령」에 기초한 '국민등록', '과학기술자등록', '기능자등록'으로 기술자·기능자 48만 5,188명(1944.5), 남자 청장년 319만 4,969명(1943.9, 1944년에는 687만 5,545명 예정), 합계 368만여 명을 등록시켰다.[16]

노동자 결핍현상이 심각해진 1944년 8월부터는 '관알선'을 존속시키면서 「국민징용령」, 「조선인 노무자 내지 송출 방법의 강화에 관한 건」 등을 근거로 일종의 징용영장에 해당하는 파란 딱지 1장으로 조선인을 '강제노역동원'에 내몰았다. 「국민징용령」(제18조)에 의하면 피징용자는 이들을 사용한 기업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도록 되어 있다. 징용령 단계에서도 조선인 인솔, 작업장 배치, 노무관리 등은 모두 각 기업의 소관사항이었다. 다만 「국민징용령 질의요강」에는 '징용이란 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피징용자를 일정한 업무에 종사하도록 강제하는 행정처분'임을 명기했다. 더욱 분명한 차이는 관리의 주체가 일본정부임을 분명히 했다는 점이다. '모집'과 '관알선'에서는 노역자의 모집과 고용계약 등에 모두 사업주와 노역자의 개인고용계약의 형식을 취했다. 「국민징용령」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일본정부가 직접 개입했기 때문에 노역자는 일본정부와 사업주라는 두 주체와 이중의

16) 박경식, 『일본제국주의의 조선지배』, 청아, 1986, pp.356-358.

고용계약 아래 놓였고 일본정부와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노역자의 사고나 사망에 대한 부조를 공동으로 책임져야 했다.[17] 1945년 3월 31일에는 「국민근로동원령」을 공포하면서 「국민징용령」 등을 폐지하고 이후부터 '징용'이라는 용어를 '동원'으로 대체했다.[18]

'모집', '관알선', '징용' 등은 형식이 약간 다르지만 모두 국가권력의 계획에 의하여 군부 · 관헌 · 자본가들의 이해가 일치하여 조선인들을 강제적으로 끌어 모아 노역을 시켰다는 것에는 차이가 없다. 일제가 조선을 강점한 이후 조선민중은 글이나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가혹하게 착취당하고 학대받았지만 특히 전시체제가 되면서부터 입은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다. 조선 민중은 탄광, 금속광산 등을 비롯하여 수력발전, 철도도로 공사, 군수공장은 물론 군사도로, 비행장 등의 군사기지공사, 군사요원으로부터 일본군위안부에 이르기까지 도처에서 가혹한 조건으로 혹사당했다.

'관알선'은 경찰과 면직원이 납치하다시피 끌고 간 '강제연행'이라고 평가한 이래 일본을 비롯하여 한국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지만 기본적으로 박경식의 견해를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정부의 공식적 입장은 정상적인 직업소개라는 명목으로 합리화하는 데만 급급하고 있다. 당시 강제노역을 관리하던 일본인 노무계들의 회고를 통해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는 상당히 많다.

2. 열악한 '노역환경'과 미불금

조선인들은 일본에 도착한 뒤 군대식 훈련을 받고 민족차별과 폭력을 감내하면서 위험도가 높은 '노역장'에 집중배치되어 공휴일 반납이 일상화된 강제노역으로 혹사당했다. 박창환, 이근옥, 이병목, 정창회, 정상화 등의 소

17) 정혜경, 앞의 책(2006), p.105.
18) 『조선총독부관보』, 1945.3.31.

장에 따르면 각자의 작업장에서 월 2회의 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철판을 자르거나 동관을 구부리는 일, 배관일 등에 종사했고 하루 작업을 마치면 미쓰비시가 마련한 숙소인 료(寮)로 돌아가 숙식을 해결했다. 식사의 양이나 질은 현저히 부실했고 숙소도 다다미 12개 정도의 좁은 방에서 10-12명의 피징용자들이 함께 생활했다. 또한 숙소 주변에는 철조망이 쳐져 있었고 근무시간은 물론 휴일에도 경찰 등에 의한 감시가 삼엄하여 자유가 거의 없었으며 한반도에 남아 있는 가족들과의 서신 교환도 사전검열을 받아야 했다.[19]

대부분의 조선인들은 노역을 하기 전에 훈련과정을 거쳤는데, 간단한 제식훈련을 통해 규율을 체화하도록 하고 추가로 작업장별 직무교육을 하는 형태가 일반적이었다. 경우에 따라서 간단한 산수나 일본어 회화도 훈련 내용이 되기도 했다. 탄광, 조선소, 공장 등 직종에 따른 훈련을 시킨 것이다. 훈련기간은 1-2일에서 1-2주까지로 일률적이지 않았다. 제식훈련의 경우에는 출발이전에 집결지에서 받는 경우가 있었으나 작업관련 훈련은 대부분 현장에 도착해서 받았다.[20]

이들은 다코베야(文魚房)나 함바(飯場), 기숙사 등 집단 합숙소에서 통제된 생활을 했다. 다코베야는 탄광에서 운영한 제도인데 지역에 따라 징벌장소로 사용한 경우도 있는 등 노역자들의 일반적인 합숙소 형태는 아니다. 함바는 야간에 외부에서 열쇠를 채우고 철망이나 판자로 외벽을 만들어 입구에 노무계 등이 지키고 있는 등 철저하게 통제된 곳도 있었으나, 개별적인 함바에 대한 통제가 아니라 지역 단위 통제가 중심이 되었다.[21] 조선인 노역자의 거주 지역을 외딴 곳에 두거나 작업장과 함바를 에워싸고 철조망을 둘러놓고 정문에 감시소를 설치하는 등 조선인들을 감금상태에 두는 형태였다. 특히 다코베야는 노역자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다고 한다.[22]

19) 대법원, 「검토보고서」, 2011(이하 「검토보고서」, p.3.
20) 정혜경, 앞의 책(2006), p.106.
21) 정혜경, 위의 책, pp.106-107.
22) 김호경 · 권기석 · 우성규, 『일제 강제동원, 그 알려지지 않은 역사－일본 전범기업

언어가 통하지 않은 상황에서 구타 등 만성적 폭력이 횡행했으며 살인적인 노동강도로 사망률도 대단히 높았다. 특히 '군함도'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일본이 패망하기 직전에는 사망률이 급증했다.[23] 대부분의 조선인들은 굶주림과 모멸감을 가장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꼽았다. 조선인 노역자들은 질적으로는 조악하고, 양적으로도 극히 소량의 식량을 받음으로써 격한 노동을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24]

그런데 조선인 노역자를 더욱 절망시킨 것은 임금이 제대로 지불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본공문서관 츠쿠바(筑波)분관 소장자료 중 '노동성조사 조선인에 대한 임금 미불표'에는 일본전국의 주요기업이 공탁한 조선인 노역자의 미불금이 80,279건이나 기재되어 있다.[25] 일본제철(현 신일본제철주식회사)에서 혹사당한 여운택 · 신천수 씨가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미불임금 50.52엔 · 57.44엔, 예금 455엔 · 410엔, 합 495.52엔 · 467.44엔이 일본의 패전 이후 공탁되었다. 이처럼 패전 후 일본 정부가 미불금 공탁을 서두른 것은 재일본조선인연맹 등 조선인단체의 미불금 지급요구를 막기 위해서였다고 한다.[26]

아소 다로(麻生太郎) 일본 부총리의 증조부가 창업한 아소탄광도 그렇다. 후생성 기록 등에 따르면 1939-1945년 아소그룹 소속 탄광으로 '강제노역동원'된 조선인은 1만 623명으로, 이들은 낮은 급여뿐만 아니라 미불금으로 많은 고통을 겪었다. 사가현 구바라(久原)광업소는 급여 7,415엔(100명), 보조금 2,370엔(133명), 원호금 475엔(2명) 등 1만 엔이 넘는 돈을 공탁했는데, 121명분 저금 3,359엔은 공탁조차 하지 않았다.[27]

과 강제동원의 현장을 찾아서』, 돌베게, 2010, p.68.

23) 윤지현, 앞의 논문, p.238.

24) 김호경 · 권기석 · 우성규, 앞의 책, pp.145-146.

25) 정혜경, 앞의 책(2011), p.200.

26) 정태헌 · 기광서, 「일제의 반인륜적 조선인 강제노무동원과 임금탈취」, 『역사와 현실』 50, 2003, p.420. 신일본제철 소송과 관련해서는 국사편찬위원회, 『일본제철 강제동원 소송기록』 1-3 2005 참조.

27) 강제노역 미불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竹內康人, 『戰時朝鮮人强制勞働調査資料集. 2, 名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노역했으나 임금마저 지불되지 않는 상황에서 조선인들은 집단적으로 저항했다. 사할린지역의 경우 조선인탄광노역자들은 1940년 2월부터 1944년 2월까지 총 8건의 저항사건을 일으켰다.[28] 이들 탄광에서 노역한 조선인 3,134명의 16%에 해당하는 501명이 파업과 태업, 폭행 등에 참가했고, 이 가운데 63명이 검거되었다. 1940년에 검거된 조선인 20명 가운데 대부분이 훈방 조치된 데 비해 1943년부터 1944년까지 검거된 43명은 모두 폭력행위 등 단속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미불금을 받는 것도 포기하고 생명을 건 탈출도 속출했다. 1939-1945년 3월까지 조선인 노역자 가운데 대략 22만여 명이 탈출했다.[29] 한 기록에 의하면 동원된 노역자 수를 1939년과 비교할 때 1942년에는 약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었다. 감소요인 가운데 만기 귀환한 자는 겨우 7.3%에 지나지 않았던 반면 탈출이 35.6%나 되었다.[30]

Ⅲ. 해방이후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와 판결

1. 일본에서의 소송 제기와 판결 논리

억울한 희생을 당한 '강제노역동원' 피해자들은 해방이후에도 대부분 가슴에 한을 묻고 살아야했다. 원자폭탄이 투하되자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박창환은 철파편에 맞아 턱의 살이 떨어져 나간 상태로 1945년 9월경 시모노세키에서 밀항선을 타고 귀국했다. 이근목은 1945년 10월경 하카다(博多)

簿 未拂い金 動員數 遺骨 過去淸算』, 神戶學生靑年センター出版部, 2012, pp.37-60.

28) 長澤秀, 戰前朝鮮人關係警察資料集』 3-4, 綠蔭書房, 2006 참조.

29) 박경식, 앞의 책(2008), p.87.

30) 前田一, 『特殊勞務者の勞務管理』, 山海堂, 1943, p.133.

에서 밀항선을 타고, 정상화는 1945년 10월 20일 경 시모노세키에서 밀항선을 타고 각각 귀국했다. 이병목도 원자폭탄이 투하될 때 유리파편에 맞아 팔다리에 상처를 입은 상태로 1945년 9월 경 하카다에서 UN군이 마련한 귀국선을 타고 귀국했으며 정창희는 1945년 8월 30일 경 시모노세키에서 관부연락선을 타고 귀국했다. 이후 이들은 강제노역 이전에 다니던 직장을 잃는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피폭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전신권태감, 호흡곤란, 피부질환, 시력감퇴 등의 각종 신체적 장해에 시달리며 고통을 겪었다.[31]

이들은 1995년에 들어와 일본국 히로시마지방재판소에 미쓰비시를 상대로 구 미쓰비시의 강제노역 등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금(1인당 1,100만엔)과 강제노역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급여 등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 금액(박창환이 99,014엔, 이근목이 96,056엔, 이병목이 68,424엔, 정창희, 정상화가 각각 59,512엔)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1999년 3월 25일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자 히로시마고등재판소에 항소했으나 2005년 1월 19일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상고심인 최고재판소에서도 2007년 11월 1일에 상고기각되어 판결(이하 일본판결)이 확정되었다.[32]

일본판결은 구 미쓰비시와의 관계에서 징용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될 여지를 남겼으나 20년의 제척기간(除斥期間) 경과로 소멸했다는 논리에 입각한 것이다. 원고들도 이를 예상하여 제척기간의 적용 제한을 주장했으나 일본판결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제척기간의 적용이 현저히 정의, 공평의 이념에 반할 때는 그 효과 발생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그 적용제한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가 심각하고 구제의 필요성이 존재하며 제척기간 내의 권리행사가 곤란했다는 점, 가해자의 책임면제가 상당하지 않다는 점의 사정에 추가하여 권리행사가 가능해진 후부터 신속하게 피해자가 그 권리를 행사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한일국교정상

31) 대법원 접수 2009.3.16.
32) 「검토보고서」, p.8.

화(1965), 원호협회 임원들의 보상요구(1972), 미쓰비시와의 보상교섭(1974)으로부터 20년 이상이 지났다는 논리를 내세웠다.[33]

일본판결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청구권, 미불금 등 청구권의 발생 당시에 원고들을 일본인으로 보고 청구권이 발생한 한반도를 일본영토의 구성부분으로 간주함으로써 역사적 맥락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또한 원고들의 청구에 적용될 준거법을 일본법만으로 상정하여 국제법적 관점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일본판결은 1910년의 '한국병합조약'이 유효하다는 인식하에 1945년 9월 7일 미군이 38도 이남지역으로 진주할 때까지 일본이 한반도와 그 주민을 합법적으로 지배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항소인들이 국제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로 인정될 수 없고 또한 항소인들이 주장하는 강제연행, 강제노동과 관련하여 항소인들 개인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구체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국제법 규범의 존재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국제법 위반에 의거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항소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2. 한국에서의 소송, 제1심과 원심은 원고 패소

미쓰비시 사건의 원고들은 2000년 5월 1일에 부산지방법원에 미쓰비시를 제소했다.[34] 당시 소송 원고들의 주장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주장이다. 구 미쓰비시는 일본의 침략전쟁에 편승하여 원고 등을 강제연행한 다음 열악한 환경에서 강제노역에 종사하게 했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직후 일본인 노역자들에 대하여 적극적인 구호활동을 한 것과는 달리 원고 등에 대하여는 피난장소나 식량 등을 전혀 제공하지 않은 채 피폭현장에 방치했으며 일본정부의 「국민징용령」

33) 「검토보고서」, p.105-108.
34) 부산지방법원 접수 2000.5.1.

에 의한 징용 사유가 종료한 후에는 원고 등을 한국에 안전하게 귀환시킬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환에 필요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구 미쓰비시가 원고 등에게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각 1억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두 번째로는 미불금 청구에 관한 주장이다. 구 미쓰비시는 원고 등을 강제노역에 종사하게 하면서 약정된 월급의 절반을 본국에 남아 있는 가족들에게 직접 송금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약속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 등에게 직접 지급하던 월급에서 국민저금 명목으로 공제했던 돈을 강제노역이 종료된 뒤에도 원고 등에게 반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미불금을 현재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세 번째로는 미쓰비시와 구 미쓰비시의 동일성이다. 미쓰미시와 구 미쓰비시는 외형상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로 보이나 제2회사가 구 미쓰비시의 영업을 계속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그 과정에서 인적 · 물적 조직을 그대로 승계했을 뿐 아니라 제2회사의 초대 사장이 모두 구 미쓰비시의 상무이사였던 점, 미쓰비시가 구 미쓰비시의 상호와 상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점, 미쓰비시가 구 미쓰비시와 동일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구 미쓰비시의 역사까지도 미쓰비시의 역사로 간주하여 홍보하고 있는 점, 미쓰비시와 같은 계열사 경영자들의 모임인 금요회가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점을 통해 볼 때 동일하다.

이에 대해 미쓰비시는 이 사건 소는 국제재판관할권이 없는 한국법원에 제소되었으므로 적법하지 않아 각하하여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강변했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일본에서의 종전 소송 확정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가 정한 승인요건을 갖추고 있어 한국에서도 그 효력이 있고 한국법원은 일본에서 확정판결된 소송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원고들에 대해 구 미쓰비시의 손해배상금 내지 급여 지급 의무가 없으며 설령 구 미쓰비시의 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미쓰비시는 구 미쓰비시와 동일성이 없을뿐더러 구 미쓰비시의 채무를 승계한 바도 없어 구 미쓰비시의 원고들

에 대한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원고들의 구 미쓰비시에 대한 이 사건의 각 채권은 소멸되었거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모두 소멸했으며 구 미쓰비시는 1948년 9월 경 원고 등을 위하여 미불금과 국민저금 상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했으므로 적어도 원고들의 채권은 남아 있지 않다.

한국의 제1심 법원은 청구를 기각하여 원고 패소결정을 냈다.[35] 그에 대한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구 미쓰비시의 국제법적 손해배상책임 여부이다. 강제노동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제29호 조약과 뉘른베르크 제원칙의 각 규정에 따르면, 강제노동 및 인도에 반하는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인에게 강제노동을 실시한 주체나 인도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직접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노예제 금지가 국제법적 강행규정으로 간주된다고 하더라도 노예제로 피해를 입은 개인이 노예제 금지를 위반한 주체를 상대로 직접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국제관습법도 확인되지 않았다.

다음으로는 구 미쓰비시의 국내법적 불법행위에 따른 미쓰비시의 손해배상책임 여부이다.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의 손해배상채권이 구 미쓰비시의 인도(人道)에 반하는 전쟁 범죄에 관련된 손해배상채권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그와 같은 채권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그 동안 한국인의 일본 또는 일부 국가에 대한 개인적 손해배상청구권도 포기된 것인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어 왔고 원고들이 위 청구권협정의 명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여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청구권협정의 존재 또는 대일 민간청구권의 소멸을 규정한 일본 국내법의 제정·시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권리 행사를 저지하는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의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2005년 8월 26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세 번째로는 구 미쓰비시의 미불금 청구에 대한 미쓰비시의 지급책임 여

35) 부산지방법원 2007.2.2. 선고 2000가합7960 판결.

부이다. 원고 등이 구 미쓰비시의 노역자로서 강제노동을 하고 한국으로 귀환할 당시 구 미쓰비시로부터 지급받지 못하고 남은 급여액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들의 임금 채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과 마찬가지로 원고들의 임금 채권 역시 최장 10년의 소멸 시효 기간이 경과하여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여러 차례 재판 끝에 2009년 2월 9일에, 원심법원인 부산고등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36] 한국법원의 독자적 입장에서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정하여 판단하더라도 원고들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채권은 시효의 완성으로 모두 소멸했다는 것을 명분으로 삼았다. 이는 당시의 대한민국 법원이 역사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본과의 외교적인 관계에만 집착한 보수적인 측면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3. 한국 대법원 원고 승소판결의 역사적 의미

원고들은 위 항소심판결에 대해 상고하면서 1965년 한일협정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37] 대법원은 2012년 5월 24일에 부산고등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이 외국판결의 승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고 구 미쓰비시와 미쓰비시가 실질적으로 동일하기에 법적으로 동일한 회사로 볼 수 있으며,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한국 국민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산고등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환송심 판결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을 취소하고 원고들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을, 부산고등법원 역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에게 8천만 원 등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했다. 대법원은 '일

36) 부산고등법원 2009.2.9. 선고 2007나288호 판결.
37) 대법원 접수 2009.3.16.

본군 성노예', 원폭피해자, 사할린동포의 손해배상청구권 이외에 국외강제동원으로 인한 부상자나 생환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행사하는 손해배상청구권도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결했다.[38]

이는 법치국가의 기본적 원칙을 중시한 판결로 법적으로도 충분한 검토를 거친 것이었기 때문에 정당한 귀결점이라 할 수 있다. 대법원의 판결논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39] 먼저 한국에서 일본판결을 반드시 승인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들고 있다. 민사소송법(2002. 7. 1. 시행) 제217조 제3호는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한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을 외국 재판의 승인요건의 하나로 규정한다. 외국에서 재판을 하더라도 관철되어야 하는 한국법상의 절차적인 기본원칙이 외국의 소송절차에서 침해된 경우 외국판결의 승인은 절차적 공서(公序)에 반한다. 이는 포기할 수 없는 절차법적 정의의 요구, 즉 절차적 정의의 최소한의 기준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법치국가의 기본적 원칙이다.

다음으로는 원고들의 청구권의 시효가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피해가 심대할 뿐만 아니라 미쓰비시가 그로 인하여 막대한 이득을 취한 사정, 일본 패망후 미쓰비시가 한국인 피해자들을 대한 태도와 일본인 및 다른 외국인들에게 대응한 모습을 아울러 살펴야 한다. 소멸시효제도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거가 사라지는 일반적인 오판가능성을 막기 위한 제도인데 이 사건과 같이 역사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실에 기초한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증거가 사라져 오판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 또한 반인권적 전쟁범죄자나 그에 적극 가담한 자에 대한 불법행위채권에 대하여는 소멸시효법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미쓰비시와 구 미쓰비시가 동일하기 때문에 미쓰비시가 구 미쓰비시의 원고들에 대한 채무를 승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쓰비시가 회

38) 대법원 2012.5.24. 선고 2009다22549 판결.
39) 필자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대법원의 판결논리를 정리했다.

사의 속인법인 일본법에 따라 구 미쓰비시와 다른 법인격을 갖고 있다는 주장은 한국의 공서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한국의 법규와 법리를 적용하게 되면 원고들은 구 미쓰비시가 회사제도가 인정하는 법인격을 남용하여 설립한 미쓰비시에 대해서도 구 미쓰비시의 원고들에 대한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한일협정으로 원고들의 청구권이 소멸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상당기간 외교적 보호권의 포기와 개인청구권의 소멸이 결합된 채로 국가실행이 이루어져 왔고 그것이 국제실정법상 유효하다고 해도 일본정부가 개인청구권 불소멸론을 오랜 기간 공식입장으로 채택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권협정에서 조약당사자의 의사는 이를 분리하여 개인청구권을 청구권협정 그 자체로 소멸시키지 않고 외교적 보호권만을 포기하려는 것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외교적 보호권을 포기했으므로 양국이 국내조치에 의해 상대방 국민의 개인청구권을 소멸시키더라도 국가가 나서서 이를 외교적으로 보호할 수단을 상실했을 뿐이다. 이에 더하여 식민지배 배상과 관련된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해당부분의 외교적 보호권도 포기되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대법원에서 기존판결을 뒤엎은 것은 당시 법조계에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지만 '역사학계'입장에서 당연한 판결이었다. 국제법을 따라야 한다는 교조적 입장에 따라 일반상식과 정서에 반하면서 피해자들의 억울한 사정을 외면했던 한국법원이 상당기간 자료수집과 법리분석을 통해 피해자들이 입장에서 올바른 판결을 한 것이다. 대법원 판결은 '강제노역동원'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 실마리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Ⅳ. 맺음말

일제강점 이후 망국의 서러움을 겪었던 강제노역 희생자들은 해방이후에도 일본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한국정부의 무책임한 태도 아래 오랫동안 잊힌 상태로 살아야 했다. 뒤늦게나마 한국의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소송에 대해 승소판결을 내린 것은 역사적 의미가 상당히 크다. 그럼에도 한국의 대법원 판결로 배상에 대한 법적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일본기업들이 배상문제는 일본기업이 아니라 "일본정부를 상대로 따질 문제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1965년 한일협정으로 문제가 해결됐다"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여전히 한국의 대법원 판결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본정부가 전향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일본정부가 먼저 움직여 기업과 국민에게 왜 사죄해야 하고 보상이 필요한지 설득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에서 독일의 강제노동 보상에 관한 사례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1990년대 초반까지도 독일의 입장은 현재의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독일통일 이후 강제노동 관련 소송이 약 5천 건이나 되었다. 독일 사법부는 '강제 노동에 대한 보상은 배상권에 속하는 것으로 개인이 아니라 국가만 청구할 수 있다'는 원칙하에 대부분 소를 기각했는데 1996년에 독일연방 헌법재판소가 1996년에 개인이 강제노동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더욱 결정적인 계기는 미국과 스위스에서의 집단소송이었다. 특히 강제노동 피해자가 상당수 거주했던 미국에서 소송이 잇따르자 독일기업의 책임의식과 도덕성에 대한 비판여론이 형성되었다. 이에 독일정부는 '나치 강제노동을 위한 보상'을 구성했고 기업들은 '독일경제의 기금 이니셔티브'를 창설했으며 이것이 합쳐져 '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EVZ)' 재단이 되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순탄한 것은 아니었다. 상당수 독일인은 "전쟁이 끝

난 지 50년이 넘었는데 왜 이제 와서 보상이냐"라면서 반대했다. 그럼에도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독일내부의 양심적 지식인과 정치인들이 함께 움직인 내적 조건과 독일기업의 해외에서의 이미지와 관련한 외적 조건이 결합되었기 때문이다.

과거 강제노역과 관련이 있는 일본기업들도 현재 일본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이 많다. 따라서 '강제노역문제'에 대해서 이를 국제적인 공론장으로 끌어들여 적극적으로 알리고 해결책을 논의해야 한다. 현재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의 양심적 지식인과 NGO들이 피해자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6년 5월 31일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의 다카하시 마코토 공동대표는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 자료집 '법정에 새긴 진실' 출판기념회에서 "과거청산을 둘러싼 장애물은 높아도 우리가 힘을 합치면 장애물은 넘을 수 없는 것이 아니다"고 하면서 미쓰비시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고 주장했다. 이러한 한일시민운동의 연대는 장기적으로 한일 정치권에 영향을 주고 국제사회에서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일제하 조선인 '강제노역동원'과 관련한 현실적인 문제들도 언제가 해결되리라 기대한다. 다만 '강제노역동원' 당시 10대-20대였던 피해자들이 이제 고령으로 사과·보상을 받기도 전에 세상을 떠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논문투고 : 2018. 03. 16, 논문심사완료 : 2018. 03. 23, 게재확정 : 2018. 04. 06)

참고문헌

『조선총독부관보』, 1945.3.31.

국사편찬위원회, 『일본제철 강제동원 소송기록』 1-3, 2005-2006.

대법원, 「검토보고서」, 2011; 부산지방법원 접수 2000.5.1; 부산지방법원 2007.2.2. 선고 2000가합7960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9.2.9. 선고 2007나288호 판결; 대법원 접수 2009.3.16; 대법원 2012.5.24. 선고 2009다22549 판결.

심혜리, 「군함도는 통한의 과거 아닌 오늘의 문제 '기억'이라는 작가의 의무로 27년 매달려」, 『경향신문』, 2016.5.18.

外務省情報文化局, 『外務省發表第十号および公式資料集第八号(合冊)』. 1960.

竹内康人, 『戦時朝鮮人強制労働調査資料集. 2, 名簿 未払い金 動員数 遺骨 過去清算』, 神戸学生青年センター出版部, 2012.

長澤秀, 『戰前朝鮮人關係警察資料集』 3-4, 緑蔭書房, 2006.

前田一, 『特殊勞務者の勞務管理』, 山海堂 4, 1943.

水田直昌, 『財政・金融政策から見た朝鮮統治とその終局』, 友邦協會(近藤釰一 編, 『太平洋戰下の朝鮮』 3卷), 1962.

김민영, 『일제의 조선인노동력 수탈 연구』, 한울아카데미, 1995.

김호경·권기석·우성규, 『일제 강제동원, 그 알려지지 않은 역사－일본 전범기업과 강제동원의 현장을 찾아서』, 돌베게, 2010.

박경식, 『일본제국주의의 조선지배』, 청아, 1986.

이상의, 『일제하 조선의 노동정책 연구』, 혜안, 2006.

정혜경, 『조선인 강제연행·강제노동 Ⅰ: 일본편』, 선인, 2006.

_____, 『일본'제국'과 조선인 노무자 공출－조선인 강제연행·강제노동연구 Ⅱ』, 선인, 2011.

한일민족문제학회, 『강제연행·강제노동 연구 길라잡이』, 선인, 2005.

岡田邦宏, 『朝鮮人强制連行はあつたのか－事實が語る「强制連行」說の虛構』, 日本政策研究センター, 2003.

外村大, 『朝鮮人強制連行』, 岩波新書, 2012.

山田昭次·古庄正·樋口雄一, 『朝鮮人戰時労働動員』, 岩波書店, 2005.

강병근, 「국제법적 관점에서 본 일제강제징용 배상판결의 주요쟁점에 관한 연구」, 『저스티스』 143, 2014.
김민영, 「일제하 조선인 '강제연행' 문제의 연구쟁점과 전망 (1)－전후처리 · 보상문제를 중심으로」, 『춘계박광순박사 화갑기념논문집』, 1993.
김인덕, 「일본지역 강제연행 연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7, 1997.
석광현, 「강제징용배상 및 임금 청구의 준거법」, 『서울대학교 法學』 54-3, 2013.
윤지현, 「死亡 記錄을 통해 본 端島炭鑛 朝鮮人 死亡者 被害實態(1925-1945)」, 『한일민족연구』 23, 2012.
이근관, 「한일청구권협정상 강제징용배상청구권 처리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서울대학교 法學』 54-3, 2013.
이동진, 「강제징용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와 그 범위에 관한 몇 가지 문제」, 『서울대학교 法學』 54-3, 2013.
정인섭,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대상범위에 관한 연구」 『성곡논총』 25, 1996.
정태헌 · 기광서, 「일제의 반인륜적 조선인 강제노무동원과 임금탈취」, 『역사와 현실』 50, 2003.
천경훈, 「전후 일본의 재벌해체와 채무귀속－일제강제징용사건의 회사법적 문제에 관한 검토」, 『서울대학교 法學』 54-3, 2013.
홍재환, 「전시기 조선인 동원자수 추정치 활용에 대한 비판」, 『경제사학』 44, 2008.
飛田雄一 · 金英達 · 高柳俊男 · 外村大, 「朝鮮人戰時動員に關する基礎研究」, 『靑丘學術論集』 4, 1994.

• 국문초록 •

조선인의 '강제노역동원'은 조선, 일본, 사할린, 만주, 중국, 남방 등 일본제국권 전역에서 이루어졌다. 일제는 군부 · 관헌 · 자본가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모집', '관알선', '징용' 등으로 조선인들을 강제적으로 끌어 모아 노역을 시켰다. 일제가 조선을 강점한 이후 조선민중은 가혹하게 착취당하고 학대받았지만 특히 전시체제가 되면서 강제노역으로 큰 피해를 당했다. 끌려간 조선인 노역자는 감금상태에서 노역하면서 언어가 통하지 않은 상황에서 구타 등 만성적 폭력에 시달렸고 살인적 노동강도로 사망자가 속출했다. 그리하여 조선인들은 집단적으로 저항했으며 심지어는 미불금 받는 것도 포기하고 생명을 건 탈출을 시도했다. 억울한 희생을 당한 '강제노역동원' 피해자들은 해방 이후에도 대부분 가슴에 한을 묻고 살았다. 이들은 1990년대에 들어와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가운데 '미쓰비시 사건'의 원고들은 일본에서 패소하자 한국에도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결국 한국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다. 대법원에서 기존판결을 뒤엎은 것은 당시 법조계에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지만 '역사학계'입장에서 당연한 판결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본기업들은 한국의 대법원 판결을 거부하고 있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과제로 남아 있다. '강제노역동원'과 관련한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사학계에서 축적된 연구를 바탕으로 법학계의 법리적 검토를 종합하는 학제 간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한일시민운동의 연대를 통해 한일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아 일제하 조선인 '강제노역동원'과 관련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강제노역동원, 미불금, 모집, 관알선, 징용, 대법원, 시민운동, 손해배상소송

• Abstract •

The Forced Labor Mobilization of Koreans under Japanese Imperialism and Suits for Damages

Song, Kue-jin

The compulsory mobilization of Koreans was implemented throughout Korea, Japan, Sakhalin, Manchuria, China, and the southern regions of Asia. Under the plan of Japanese government, the interests among the military, the constitution, and the capitalists of Japan were coincided and they forced Koreans to the toil on the pretext of 'recruitment', 'government recommendation', or 'requisition'. Koreans were subjected to chronic violence while working in detention, resulting in death due to murderous labor intensity. Thus, the Koreans resisted collectively and even tried to escape at the risk of life, giving up the unpaid wages. The victims of the forced labor mobilization had to live without any recompenses after liberation. They filed suit in the 1990s, among which the plaintiffs of "Mitsubishi case" filed suit in Korea after losing a lawsuit in Japan. They finally prevail in the Supreme Court. The verdict of Supreme Court overturned the existing ruling, which was a very shocking event in the legal profession at the time, but it was a fair judgment in the sense of "history academia". However, the Japanese companies have refused to accept the Supreme Court ruling in South Korea, which remains an unresolved issue. Interdisciplinary research combining the judicial review of the legal system based on the researches accumulated in the history academia, is necessary to solve the problems related to the forced labor mobilization. In addition, the solidarity of the Korean-Japanese Citizens' Movement could evoke the influenc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help solving the real problems related to the forced labor mobilization of Koreans.

Key word : The Forced Labor Mobilization, Unpaid Wages, Recruitment, Government Recommendation', Requisition, Supreme Court, Citizens' Movement, Suits for Damage